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10

서 울 행 정 법 원

002. 1. 29. 판결선고	인
2002. 2. 29. 원본영수	

제 13 부

판 결

사 건 2001구16445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원 고 A

피 고
1. 금융감독위원회
2. 예금보험공사

변 론 종 결 2001. 12. 1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금융감독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가 2001. 2. 3. 대우그룹의 12개 계열사에 대한 특별감리결과와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및 회의록에 관하여 한 부분공개결정 및 피고 예금보험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같은 해 4. 6.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채무기업의 명단과 부실채무의 규모에 관하여 한 비공개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갑 1, 2호증, 을가 1호증의 1, 2, 3, 을가 3호증, 을나 1호증, 이 법원의 이 사건 공개청구정보에 대한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가. 금융감독원은 1999. 11.경 대우그룹의 12개 계열사(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대우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 오리온전기 주식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 대우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남금속, 대우정밀공업 주식회사, 대우통신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과 관련하여 재무상태에 대한 실사결과 나타난 분식회계사항과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 여부를 조사하고자, 피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대우 그룹분식회계조사감리특별반을 설치한 후 2000. 8. 31.까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특별감리를 실시하였고, 피고 위원장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호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하 ‘증선위’라 한다)는 위 특별반으로부터 위 감리결과와 분식회계에 관련된 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의 처리방안을 기재한 안건 및 관련자료(이하 ‘안건자료’라 한다)를 넘겨받은 후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2000. 9. 1., 같은 달 15. 및 같은 해 12. 19. 2000년도 제17차, 제19차, 제26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바, 피고 위원장은 위의 17차 및 19차 심의결과를 토대로 2000. 9. 18. 안건자료를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검찰에 대우그룹 분식회계



관련 임직원 및 회계감사 담당 공인회계사를 외감법 위반혐의로 고발 및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 15.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대우그룹의 12개 계열사에 대한 특별감리결과와 관련하여 증선위에 회부된 안건 및 이에 첨부된 감리보고서 등 관련자료와 증선위의 회의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 청구를 이첩받은 피고는 같은 해 2. 3. ’증선위의 지적사항과 조치내용’이라는 제하에 위 공개청구정보 중 위 계열사별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의 위배사항과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사항 및 이에 대한 행정적 제재조치의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한 반면, 나머지 내용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 공사는 2001. 2. 9.경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을 대위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실기업 및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은행,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2000. 12. 31.을 기준으로 당해 금융기관의 1억 원 이상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중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의 회수의무 및 추정손실에 해당하는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명단 및 채무금액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관련된 자료를 취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1. 3. 22. 피고 공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채무기업의 명단과 부실채무의 규모’에 대하여 피고 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공사는 원고의 공개청구대상정보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소정의 신용정보로서 같은 법에 의하여 누설 및 공개가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4. 6. 원고에게 위 자료에 대한 이 사건 비공개결정을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 및 비공개결정을 모두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

(1) 안건자료

증선위의 제17차, 제19차 회의의 안건자료는 앞서 본 대우그룹의 12개 계열사 중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남금속, 대우정밀공업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회사의 1997년 및 1998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하여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중 외감법 소정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에 위배된 사항, 즉 분식결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분석결과를 지적하고, 이에 관련된 대표이사, 경리담당 임직원 및 외부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과 담당 공인회계사의 인적 사항을 명시하면서 그 중 대표이사와 임원 및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정도에 따라 허위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외감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담당 직원에 대하여는 검찰에 비위사실을 통보하는 외에 행정적 제재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관련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제26차 안건자료는 대우계열사의 분식회계에 책임 있는 일부 전직 임원들의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제17차 및 제19차 회의 당시 의결이 유보되었던 사항



의 속개를 제안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회의록

대우그룹의 12개 계열사에 대한 특별감리결과와 관련하여 증선위의 회의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이 기재되어 있는 외에 위(1)항 기재의 안건자료들에 관한 출석위원들의 질의사항 및 이에 대한 위 대우그룹분식회계조사감리특별반장의 답변내용 등 회의경과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특히 제17차 회의록은 위 특별반에서 대우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에 책임 있는 임직원들의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비위사실과 조치수준 사이의 균형 문제, 미등기 임원과 등기 임원 사이의 제재의 형평성 문제,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과 담당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조치 여부와 그 정도,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과 통보의 기준, 법률에 의한 처벌이 곤란할 경우의 대안 등을 논의한 후 위 특별반장으로 하여금 미진한 부분의 검토를 촉구하고 부연자료를 추가 준비하도록 지시하면서 일부 의안의 의결을 보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제19차 회의록은 위 17차 회의에서 보류된 의안 중 임직원들에 대한 처리방안으로서 분식회계에 책임 있는 미등기임원들에 대한 조치문제, 형사고발에 있어 일부 임원의 처리문제, 공인회계사 및 일부 회계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의 취소 문제 등에 관한 출석위원들의 논의 및 의결 사항(그 중에는 관련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형사고발 및 수사기관통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과 재정경제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26차 회의록은 제17차 및 제19차 회의 당시 의결이 유보되었던 사항으로서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및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책임 있는 임



원이 다른 회사에 이사로 재직중인 것과 관련하여 이사직의 유지 여부는 당해 회사가 채권은행단의 관리체제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채권단의 판단에 일임하고, 감리결과에 대한 증선위의 심의결과 해당 회사에 대한 임원해임권고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안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마. 피고 위원장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공개한 부분

한편, 피고 위원장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01. 12. 11. 제2차 변론기일에 당초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였던 증선위의 제17차, 제19차 및 제26차 회의록 중 표지와 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의 명단이 기재된 부분을 추가로 공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위원장에 대한 청구

(1) 안건자료에 관한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위원장은, 안건자료는 대우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와 관련 있는 책임자들의 위법사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조치의 근거가 된 자료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범죄사실의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원고는 안건자료가 대우그룹의 부실원인과 부실규모 등 정책적 책임규명에 관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기능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거나 피고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상당한 이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정보공개법의 관련 조항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공개청구한 증선위의 안전자료는 대우그룹 계열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결산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적정하다고 평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내용 등 외감법 소정의 회계처리기준 및 감사기준에 위배하여 혀위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관여한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의 구체적인 외감법위반 사실 및 이에 관한 입증자료와 행정적, 형사적 제재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부분공개결정 당시 피고 위원장은 증선위의 위 안전자료에 대한 심의를 거쳐 위 임직원 및 공인회계사들을 수사기관에 고발 및 통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그로부터 얼마 후 상당수의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안전자료는 범죄의 수사 및 공소제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록 그 후의 형사재판에서 기소사실 및 재판결과가 언론을 통하여 상당 부분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 위원장의 부분공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변론종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를 기준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다) 관련 임직원들 및 공인회계사들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과 외감법위반의 혐의사실 등 조사자료를 수사기밀로 유지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대상자들의 신병



확보나 이들의 증거자료 은닉·인멸 등에 대처하도록 하는 등 적정한 수사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수사가 한참 진행중인 사항의 기초자료가 모두 공개됨으로 말미암아 형사재판이 개시되기도 전에 형사처리결과의 적정 여부를 둘러싼 비판자료로 잘못 사용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안건자료는 이에 대한 피고 위원장의 공개거부결정 당시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판단되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회의록에 관한 부분

(ⓐ)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위원장은 증선위의 회의록이 회계감사·감독에 관한 사항이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선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대우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의 규모나 정도에 비추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로 인한 폐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재발방지 등의 공익이 이로 인하여 피고 위원장이 입게 되는 불이익, 즉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초래되는 지장을 훨씬 초과하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정보공개법의 관련 조항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



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4) 판단

정보공개법 제3조에 규정된 정보공개의 원칙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관한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합의제기관의 의사형성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의 비공개여부는 당해 합의제 기관의 성격, 합의제기관이 작성한 정보, 예컨대 회의록의 내용과 성격, 다른 유사 합의제기관이나 사법절차 와의 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과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공개청구정보 중 증선위의 회의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는 피고 위원장 산하 증선위가 대우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특별감리결과를 보고받고 관련 임직원과 회계법인 및 담당 공인회계사에 대한 형사적, 행정적 제재방안 등을 비공개로 논의한 과정 및 그 결과를 사후적으로 정리, 기록한 문서로서 감사·감독 또는 규제에 관한 사항 내지는 의사형성과정에 준하는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회의록에 출석위원들이 안전자료를 검토하고 발언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어 그것이 공개될 경우, 위원이나 출석자는 향후 회의록 공개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향하는 발언을 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할 우려마저 없지 않는 등 증선위 소관사무(금융감독기구의 설



치에관한법률 제19조 참조)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위원장이 증선위의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보도자료의 형식으로 언론에 배포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공개한 증선위의 의결사항 외에 의결과정에 이르는 모든 논의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은 향후 증선위의 공정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

(1)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 공사는 원고가 공개청구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채무기업의 명단과 부실채무의 규모'에 관한 자료가 신용정보법,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피고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 공개청구대상 정보가 위 각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공기관의 예산집행에 따른 수혜자에 관한 정보로서 예산 또는 사업활동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실현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정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정보공개법의 관련 조항



제7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3) 판단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는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제한하면서 이에 위반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정보법 소정의 개인신용정보는 같은 법에 의하여 비공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공개청구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채무기업의 명단과 부실채무의 규모’에 관한 자료는 신용정보주체인 기업과 금



용기관 사이의 금융거래에 있어서 당해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고, 대출·보증·담보제공 등 거래내용 및 거래의 종류 외에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부도·대지급 등의 금액을 의미하므로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중 부실채무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그 명단과 부실채무의 규모에 관한 자료는 위 신용정보법 소정의 개인신용정보로서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위 조항 단서 중 제5호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제한의 예외사유로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공·이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을 위 '기타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 신용정보법과 정보공개법이 개인신용정보의 비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마찰을 일으키거나 순환론적인 해석에 빠질 우려가 있는바, 개인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하고자 위 조항에서 개인신용정보를 특정하여 원칙적으로 비공개사항으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정보공개법은 위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기타 다른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결국 신용정보법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 신용정보법 제27조 제1항에서 신용정보업자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자의 임원 및 직원이었던 자에게 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예금자보호법 제17조 제4항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전·현직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자들에게 일반적인 비밀엄수의무만을 부



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각 규정을 부실법인기업에 관한 원고의 공개청구정보의 비공개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뿐만 아니라 피고 공사는 위 신용정보법 제27조 제1항의 적용대상자인 신용정보업자등이나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피고 공사는 또한, 금융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설명법’이라 한다)을 위 공개청구자료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근거법률로 추가하여 내세우고 있으나, 위 법률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금융자산으로 정의하고(제2조 제2호),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증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금융거래라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3호)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 점(같은법시행령 제6조)에 비추어 원고의 공개청구정보로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채무기업의 명단과 부실채무의 규모에 관한 자료는 위 금융설명법 소정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해 부실기업 및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 피고 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1의2호) 이를 위하여 취득한 위 공개청구정보가 금융설명법 제4조 제1항 제4호 마.목 소정의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금융거래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타인에 대한 제공 및 누설이 금지되는 비공개정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금융실명법 을 위 비공개결정의 근거로 내세울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조항 소정의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 밀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된 '영업비밀', 즉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라는 보다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자산이나 부채, 이윤, 손실, 시장점유율 에 관한 자료, 매출통계, 고객 또는 납품자목록, 총경비, 운영비 등 상업적 정보뿐 만 아니라 예금, 대출상황 등의 금융자료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공개청구정보는 부실채무기업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부실채무의 규모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 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이 법원의 위 공개청구정보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자료에는 당해 기업의 거래상대방인 금융기관과 그 거래로 발생한 부채의 연체내역과 상환가능성 및 그 액수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어 당해 기업의 재무상태와 신용도를 곧바로 알 수 있고 부실채무기업 중에는 기업구 조조정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기업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각 금융기관이 판정한 부실채무 여부 및 채무액은 담보가치의 변화, 추가담



보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도 과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상황이 그대로 전부 공개될 경우 회생을 위하여 노력중인 당해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자금조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실채무기업의 회생을 통하여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궁극적 목적에도 배치될 우려가 있는 반면, 위 공개청구정보는 단순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채무기업의 명단과 부실채무의 규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적자금의 투여내용이나 투입과정, 회수내용 및 회수노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자료는 공개될 경우에 당해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피고 공사가 이 사건 소송에서 내세운 위와 같은 비공개사유는 당초의 비공개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처분의 근거규정을 달리하고 있으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채무기업의 명단과 부실채무의 규모를 당초에는 신용정보법 소정의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가 이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 위원장에 대하여 공개청구한 정보 중 안건자료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4호, 회의록은 같은 항 제5호, 피고 공사에 대하여 공개청구한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는 같은 항 제1호, 법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1-10

건자료와 회의록 중 그 내용을 일부 요약하여 공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내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채무기업주의 명단 및 부실채무의
규모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1. 29.

재판장 판사 한위수 _____

판사 김도형 _____

판사 유창범 _____